"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"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발송 No. 2017. 07. 1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수 신 받는 곳 참조

참 조

제 목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」 제정 관련 건의의견 제출

1. 귀 위원회(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현재 국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」 제정(안)에 대한 우리업계 의견을 붙임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제정 관련 건의의견서 1부. 끝.

한 국 자 원 순 환 에 너 지 공 제 조 합 이 사 장

받는 곳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(권순조 입법조사관), 김성찬 의원(이승민 비서)

담 당 **김 종 호** 팀 장 **한 인 성** 사무국장 **장 기 석** 부이사장 **진 원 기** 이 사 장 **박 무 웅**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- 334 호 (2017. 7. 13) 접수

우 0757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, 11층(등촌동,우리벤처타운)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」 제정 관련 건의의견서

Ⅰ 건의의견

□ **현행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일원화 체계 유지**

❍ '육상폐기물'과 '해양폐기물'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혼란을 방지하고자 **현행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일원화 체계를 유지**하고,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경우 **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 추진**

Ⅱ 건의사유

1 해저 고립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 우려

❍ 해저라는 관리의 어려움을 틈타 고립처분을 빙자한 불법매립 횡행 예상

❍ 기준에 따른 고립처분이라도 장시간 해수 노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폐쇄구조물 부식 침출수 발생, 해안오염 등의 환경오염 초래

2 해양폐기물이 육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해양에서 불법 처리 우려

❍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처리 기준에 따라 재활용, 소각,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, 고립처분 등 해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아 처리 기준을 무시하고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을 악용하여 불법 처리할 가능성 높아짐

3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없고 처분만 있는 법

❍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

4 폐기물 처리 관련 현재 폐관법으로 통합

❍ 해양에서 배출된다는 이유로 '해양폐기물'로 정의하여 이원화 처리·관리하는 것은 기존 폐기물 처리와 형평성 논란 및 법 적용 혼란 야기

❍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시설 광역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전국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난립과 관리·감독 부재로 환경오염 초래

5 시설에 대한 이중 투자, 추가적인 인허가, 이중 규제 등 행정적 낭비

❍ 이미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처리되는 해양폐기물을 동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의 불필요한 신설을 초래하는 등 시설에 대한 이중 투자 예상

❍ 이러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인허가 및 규제 등 행정적 낭비 초래

6 해양폐기물의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더라도 처리 주체는 환경부로 일원화

❍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해수부의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

❍ 동일 사안에 두가지 법이 적용되어 규제는 강화되나, 실효성은 저하됨

7 해양투기금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해양투기를 하는 격

❍ 오니류 등 해양투기를 금지(2016년)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해양투기를 조장하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제도